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3-108호

불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259호(2012.09.27.), 은평구고시 제2018-113호(2018.11.29.)로 정비구역 지정, 은평구 고시 제2018-113호(2018.11.29.)로 정비계획(변경)결정된 불광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,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사항)변경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07월 27일

은평구청장

1. 정비구역의 지정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불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(변경없음)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)

구 분	정비사업 명 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 경	불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은평구 불광동 19-3번지 일원	25,692	증) 260	25,952	

○ 정비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 분	정비사업 명 칭	변경내용	변경사유	비 고
변 경	불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구역면적 변경 - 25,692㎡ → 25,952㎡, 증 260㎡	교통영향평가(2022.12.20.) 결과에 따른 도로선형을 변경하고, 저촉되는 일부 사유지를 구역내 편입하는 사항임	

다. 정비계획

1) 용도지역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25,692	증) 260	25,952	100.0	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	25,692	증) 260	25,952	100.0	

※ 구역계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(용도지역 변경없음)

2) 토지이용계획 : 변경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비 율 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25,692	증) 260	25,952	100.0	
정비 기반 시설	소 계	5,315	-	5,315	20.5	•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= 5,315 - 2,479 = 2,836㎡ (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면적 1,724㎡ 및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755㎡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)
	공 원	1,873	감) 707	1,166	4.5	
	도 로	3,442	증) 707	4,149	16.0	
획 지		20,377	증) 260	20,637	79.5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
3)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가) 도로

구 분	규 모				기 능	사용 형태	연장 (m)	기 점	종 점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종로	1	1	12~23 (16.5~21)	집산 도로	1,820 (260)	불광동	불광동	일반 도로	-	-	
기정	소로	1	①	10	국지 도로	138	불광동 190-5	불광동 189-40	일반 도로	-	-	

※ ()는 구역내 구간임 / ①는 임시번호임

나) 공원

구 분	공원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기정	공원	근린공원	불광동 산54-5번지 일대	130,059	-	130,059	
변경	공원	소공원	불광동 13-5번지 일대	1,873	감) 707	1,166	철도일부와 중복결정 (중복면적 : 137㎡)

○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시설명	시설의 세분	변경내용	변경사유	비 고
공원	소공원	• 면적 감소 - 1,873㎡ → 1,166㎡, 감 707㎡	• 교통영향평가(2022.12.20.) 결과를 반영하고자 도로선형 변경에 따라 소공원 면적 감소	

다) 철도

■ 본선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		연장 (m)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				
기정	-	철도	도시철도 (6호선본선)	은평구 신사동 24번지 일대	중랑구 신내동 355번지 일대	-	36,400 (290)	(5,800)	서고시 제1994-104호 (1994.04.07)	도로일부와 중복결정 (중복면적 : 도로 702㎡)

※ ()구간은 입체적 도시계획결정임

■ 환기구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규모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-	철도	도시철도 (6호선본선)	은평구 불광동 13-5번지 일대	137	서고시 제1998-86호 (1998.03.23)	소공원 일부와 중복결정 (중복면적 : 137㎡)

4)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: 변경

시설구분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		기 준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공동 이용 시설	경 로 당	획지1	235.00	감) 5.00	230.00	155㎡이상
	어린이집	획지1	350.00	-	350.00	198㎡이상
	작은도서관	획지1	180.00	감) 70.00	110.00	108㎡이상
	어린이놀이터	획지1	1,971.74	감) 935.24	1,036.50	691㎡이상
	주민운동시설	획지1	1,310.51	감) 810.51	500.00	-
	주민공동시설	획지1	-	증) 1,221.21	1,221.21	-
	다함께 돌봄센터	획지1	-	증) 114.00	114.00	66㎡이상
	계		4,047.25	감) 485.54	3,561.71	1,534.00㎡이상

※ 공동이용시설 시설의 종류 명칭 변경 : 기정)보육시설 → 변경)어린이집, 기정)문고 → 변경)작은도서관

※ 주민공동시설 및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됨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에 해당함.

가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

나) 건축시설계획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된 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(m) /최고층수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
기정	불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25,692	획지1	20,377	불광동 19-3번지 일대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25% 이하	229% 이하	45m이하, 15층 이하 (평균 13층이하)	
변경		25,952		20,637			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			○건립규모(변경)							
			구분	세대수			비율(%)	비고		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		
			계	540	감) 49	491	100.0			
			60㎡이하	431	감) 104	327	66.6			
			60~85㎡이하	109	증) 55	164	33.4			
			85㎡초과	-	-	-	-			
			- 85㎡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: 100%							
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			○ 층수완화 : 2층(7층) → 평균 13층이하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○ 북측 10m 도로변 : 건축한계선 5m							
기타사항			○ 구역의 서측 불광 근린공원과 동측 북한산을 연결하는 동서방향의 공공보행통로(폭 6m이상, 주동간 거리 25m이상) 확보							

■ 개발가능(상한)용적률 산정

[기정]

구 분	산 정 내 용				
토지이용계획	계 (구역면적)	택지 (공동주택)	신설 정비기반시설	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	대지(획지)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·공유지
	25,692㎡	20,377㎡	5,315㎡	1,724㎡	755㎡
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	○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-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 면적-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·공유지 = 5,315㎡ - 1,724㎡ - 755㎡ = 2,836㎡ (구역면적대비 11.04%)				
계획(기준)용적률	○ 계획용적률 : 190%				
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	○ 허용용적률 = 계획용적률 + β = 190% + 5 = 195% ○ 개발가능용적률 = 허용용적률 + 계획용적률 × 1.3α = 195% + (190% × 1.3 × 0.1391) = 229.3% * α =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/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= 2,836㎡ / 20,377㎡ = 0.1391 * 허용용적률 = 190% + 5%(친환경신재생에너지) (향후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 ○ 정비계획 용적률 = 229% 이하 < 229.3%				

■ 개발가능(상한)용적률 산정

[변경]

구 분	산 정 내 용				
토지이용계획	계 (구역면적)	택지 (공동주택)	신설 정비기반시설	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	대지(획지)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·공유지
	25,952㎡	20,637㎡	5,315㎡	1,724㎡	755㎡
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	○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-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 면적-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·공유지 = 5,315㎡ - 1,724㎡ - 755㎡ = 2,836㎡ (구역면적대비 11.04%)				
계획(기준)용적률	○ 계획용적률 : 190%				
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	○ 허용용적률 = 계획용적률 + β = 190% + 5 + 5 = 200% ○ 개발가능용적률 = 허용용적률 + 계획용적률 × 1.3α = 200% + (190% × 1.3 × 0.1374) = 233.9% * α =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/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= 2,836㎡ / 20,637㎡ = 0.1374 * 허용용적률 = 190% + 5%(친환경신재생에너지) + 5%(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주거대책) (향후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 ○ 정비계획 용적률 = 229% 이하 < 233.9%				

※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(주거사업과-4568.2019.4.25)반영. 현 사업단계에서 손실보상 규모와 대상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손실보상에 대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5%를 적용하고, 추후 정비계획 변경 또는 관리처분단계를 통해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여 용적률 계획 등을 재조정

다) 평균층수 산출근거

[기정]

구 분	지상층 연면적	층 수	기준면적
101동	4,228.91㎡	13층	325.301㎡
102동	5,143.46㎡	13층	395.651㎡
103동	3,165.05㎡	11층	287.732㎡
104동	6,392.42㎡	13층	491.725㎡
105동	3,893.81㎡	13층	299.524㎡
106동	4,029.94㎡	15층	268.663㎡
107동	3,964.99㎡	15층	264.333㎡
108동	5,324.33㎡	13층	409.564㎡
109동	4,291.07㎡	11층	390.097㎡
계	40,433.98㎡	-	3,132.590㎡
평균층수	$40,433.98\text{㎡} / 3,132.59\text{㎡} = 12.91\text{층} \therefore 13\text{층}$		

[변경]

구 분	지상층 연면적	층 수	기준면적
101동	101A 859.69㎡	6층	143.28㎡
	101B 3,298.48㎡	14층	235.61㎡
	101C 2,679.89㎡	14층	191.42㎡
102동	102A 4,462.81㎡	14층	318.77㎡
	102B 2,496.59㎡	15층	178.33㎡
103동	103A 6,412.92㎡	15층	427.53㎡
	103B 2,496.59㎡	15층	166.44㎡
104동	104A 6,001.58㎡	13층	545.60㎡
	104B 1,830.83㎡	11층	166.44㎡
105동	105A 4,425.65㎡	15층	295.04㎡
	105B 2,005.94㎡	14층	143.28㎡
	105C 2,005.94㎡	14층	143.28㎡
106동	106A 4,924.65㎡	15층	410.39㎡
	106B 1,579.10㎡	12층	143.28㎡
계	45,477.65㎡	-	3,508.69㎡
평균층수	$45,477.65\text{㎡} / 3,508.69\text{㎡} = 12.96\text{층} \therefore 13\text{층}$		

6)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가)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

구 분		위 치	계 획 내 용
대지내 공지	공공보행통로	획지1	• 북한산으로의 통경축 확보 및 주변공원과 단지내 개방공간과의 연결을 위해 공공보행통로 설치 • 폭25m이상으로 조성 • 바닥은 접합되는 보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도록 하고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를 권장

7)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구 분	계 획 내 용		비 고
환경보전	•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, 내부유입을 최소화 •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,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•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•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		
재난방지	화재	•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,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 무화 •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	
	수해	• 자연토양유지 및 어린이공원의 조성을 통한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 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	
	교통	•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	

8) 정비사업 시행계획 : 변경

구 분	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	비 고
기 정	주택재건축	구역지정(변경) 후 4년 이내	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	현황 : 302세대 계획 : 540세대 증) 238세대	
변 경	주택재건축	구역지정(변경) 후 4년 이내	하나자산신탁	현황 : 302세대 계획 : 491세대 증) 189세대	

9)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정비구역 주변현황	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	비고
대상지 북측으로 불광중교 서측으로 은혜초교, 연천초교 남측으로 불광초교가 입지	- 대상지와 가장 가까운 교육시설은 연천초등학교, 불광중학교로 약 300m 떨어져 있음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(사업시행인가)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- 동측으로 약150m에 초등학교 예정지가 건설되어져 있음 - 추후, 동법 제30조(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)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반영 -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,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	

10)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

- 해당사항 없음

11)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
가) 정비구역의 주택현황

■ 건축물 동수

구역내 건축물 동수			구역내 건축물 동수		
계	주거용건축물	비주거용건축물	계	유허가	무허가
82	79	3	82	81	1

■ 거주현황

유형별 주택호수		거주 가구수			구역내 거주 인구수			비고
		계	가옥주	세입자	계	가옥주	세입자	
계	302	302	173	129	737	422	315	
단독주택	61	61	61	-	149	149	-	
공동주택	241	241	112	129	588	273	315	

※주택호수 :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,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,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

※구역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: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,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,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

■ 규모별 거주현황

구역내 거주 주택(건축물) 규모					비고
구 분	소계	60㎡이하	60초과~85㎡이하	85㎡초과	
계	302	23	127	152	
주거용	302	23	127	152	
비주거용	-	-	-	-	

※주택(건축물)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,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,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

나)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: 변경

[기정]

구 분	합계	전용면적 60㎡이하	전용면적 60초과~85㎡이하	전용면적 85㎡초과	비고
계	540	431	109	-	
조합원분양	-	-	-	-	
일반분양	540	431	109	-	
소형주택	-	-	-	-	

※ 정비구역시 조합원분양·일반분양등 선호도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반분양으로 표기

[변경]

구 분	합계	전용면적 60㎡이하	전용면적 60초과~85㎡이하	전용면적 85㎡초과	비고
계	491	327	164	-	
조합원분양	-	-	-	-	
일반분양	491	327	164	-	
소형주택	-	-	-	-	

※ 정비구역시 조합원분양·일반분양등 선호도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반분양으로 표기

12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: 변경

구분	가구	면적 (㎡)	획 지		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합계				25,692	증) 260	25,952	
1	1	25,692	불광동 19-3번지 일대	20,377	증) 260	20,637	공동주택용지
2			불광동 16-239번지 일대	3,442	증) 707	4,149	도 로
3			불광동 13-5번지 일대	1,873	감) 707	1,166	소공원

13)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

- 해당사항 없음

14)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15)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주거대책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4조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도입 및 기부채납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화 도모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27조에 따름
- 세입자 주거대책으로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5조에 따라 「공입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함

16) 환경성 검토결과 : 변경없음

검토항목		목표기준	준수 여부	현황 및 검토결과	계획에의 반영사항
자연 환경	1.생태면적율	30%	○	· 기존 토양포장상태 90% · 생태면적율 33.04%로 계획	·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녹지, 틈새투수포장 적용
	2.녹지 네트워크	녹지평가 지표1	○	· 녹지면적 II, 녹지모양 II, 내부연결성 II, 외부연결성 III	· 공원 및 녹지계획에 반영하여 계획 수립
	3.지형변동	절성토비율 20%미만	○	· 절성토 비율 13.5%	· 지형에 맞추어 계획 수립
		지형변동비율 30%미만	○	· 지형변동비율 5%	· 지형에 맞추어 계획 수립
		지하수위 보전	○	· 지하공간 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예상	· 지하공간 최소화, 완벽한 차수벽 시공으로 지하수위 유지
생활 환경	4.비오톱	3등급	○	·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, 개별비오톱 3등급으로 조사됨	·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 기능 복원 및 강화
	5.일조	연속 2시간 확보	○	· Sunlight를 이용하여 일조시간 및 일영범위 측정	· 9시~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일조 가 가능하도록 배치
	6.바람 및 미기후	바람길 확보	○	· 주변 구릉지에서 찬바람이 불어옴	· 바람 유입을 위한 건물 배치
	7.에너지	에너지절약 계획 수립	○	·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· 에너지원 변경가능여부조사	· LNG 연료사용 계획 ·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
		신재생 에너지사용	○	· 이용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	· 태양열을 이용한 보안등, 자전거보관소 등 도입계획
	8.경관	Skyline보전	○	· 배후의 능선 보호 필요	· 건물배치, 높이설정에 반영
		조망권 확보	○	·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	· 정확한 조망점 설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망권 보호
		가로녹시율 35%	X		
	9.휴식 및 여가공간	휴식.여가공간 최대확보	○	· 주변에 휴식.여가공간 부족 ·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	· 공원, 오픈스페이스에 연결하여 휴식. 여가공간 조성
		보행자전용도 로 계획수립	○	· 차 없는 외부공간 조성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검토	· 산책로 오픈스페이스 등 보행자편의를 위해 전용도로 설치
	10.보행친화 공간	자전거전용도 로 계획수립	○	· 확폭구간 내 자전거 도로 계획	· 확폭구간 내 자전거 도로 계획
		자전거보관소 15대/100unit	○	·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필요	· 법규에 맞는 자전거 보관소 설치 계획
추가	11.소음 및 진동	-	○	· 대상지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공사소음 저감대책 수립검토	· 공사시 방음판넬 설치 및 공사시간대 조절등 공사소음 저감계획 수립
	12.폐기물	-	○	· 공사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대책 수립검토	· 공사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, 생활폐기물- 재생처리 및 폐기물처리 위탁처리

■ 검토결과 : × 해당사항 없음 , ○ 환경영향 예상됨

17)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

- 없음

2. 관련도면 : 붙임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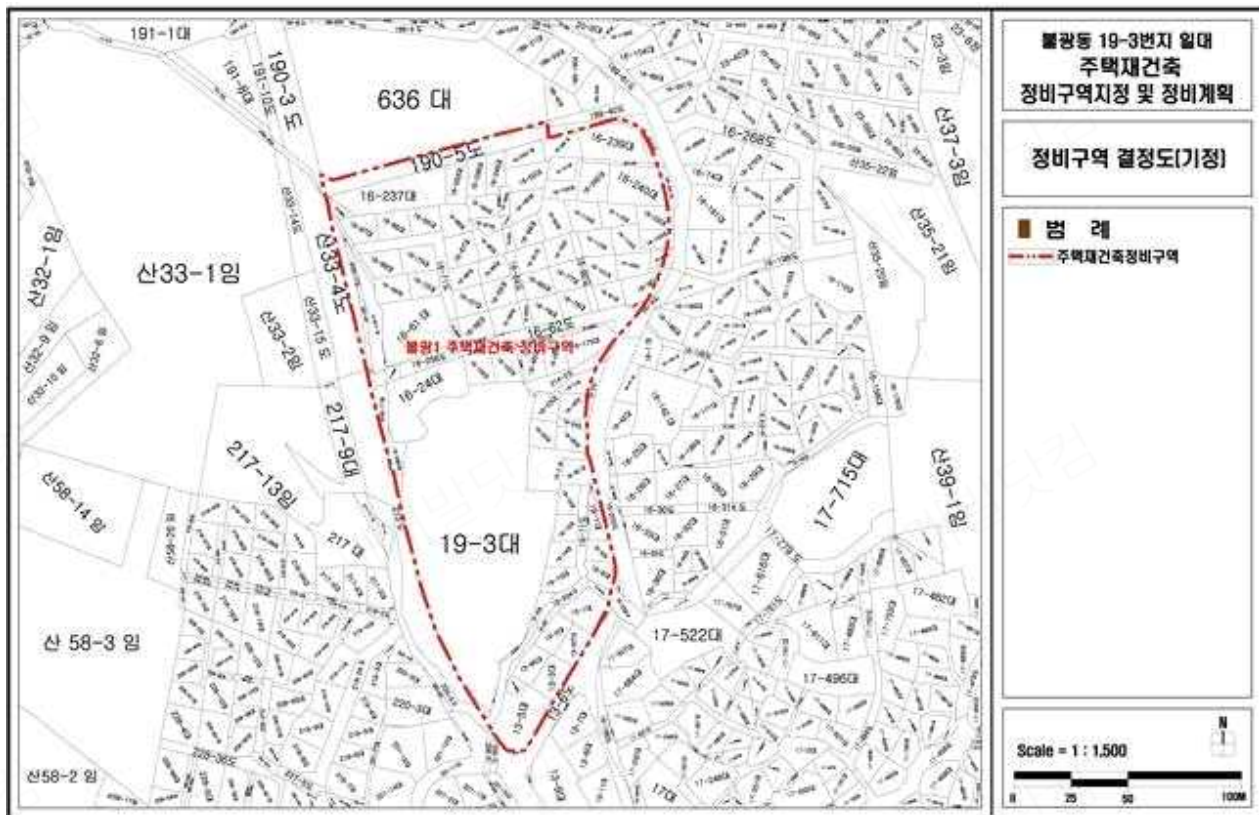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(변경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3. 관련서류 열람장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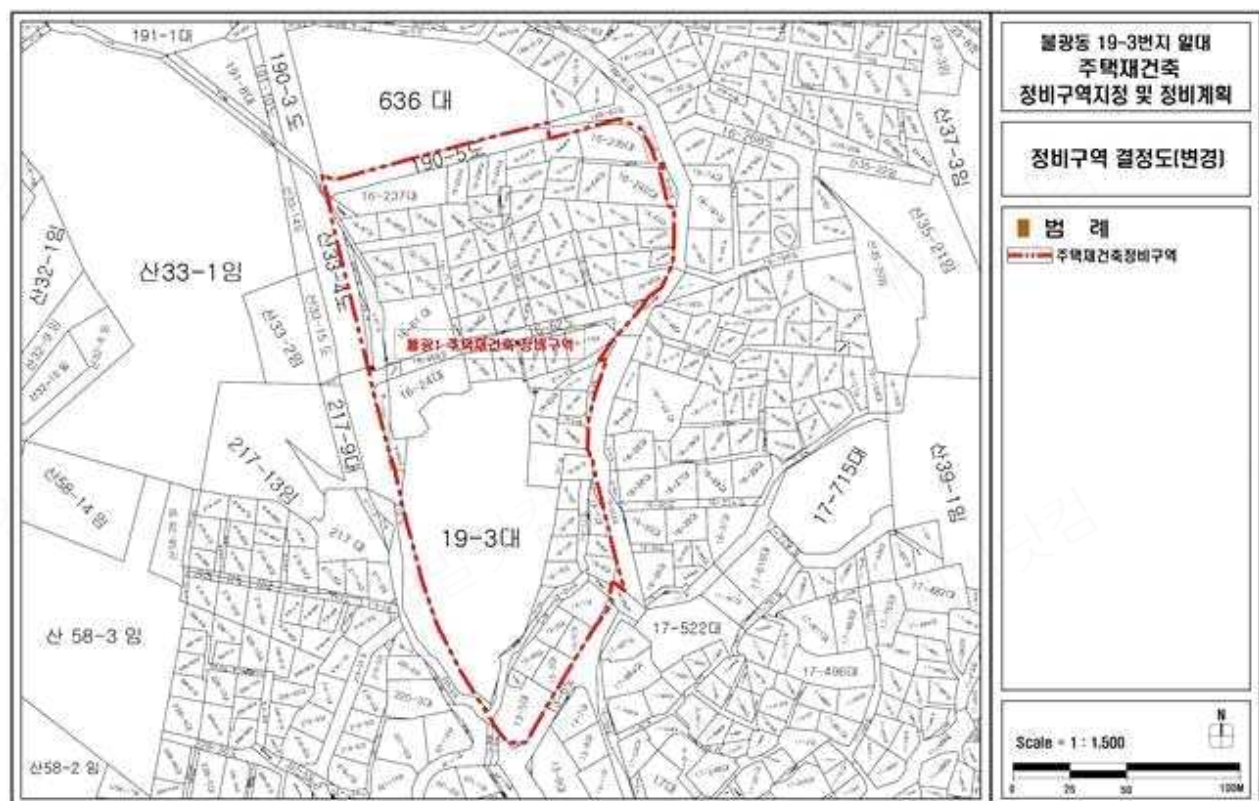
: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단(☎02-351-7493)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[붙임] 정비구역(계획) 결정 관련도면

■ 정비구역 결정도(기정)



■ 정비구역 결정도(변경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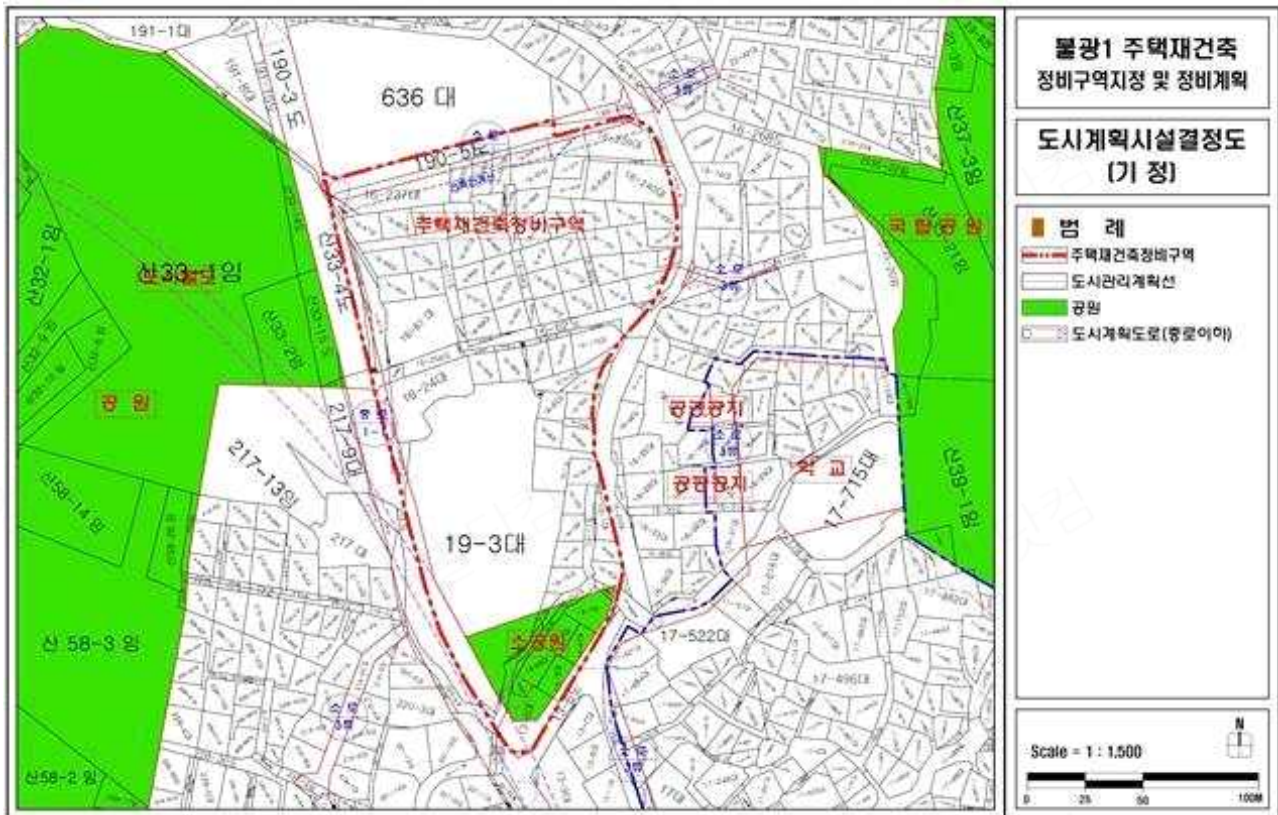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 결정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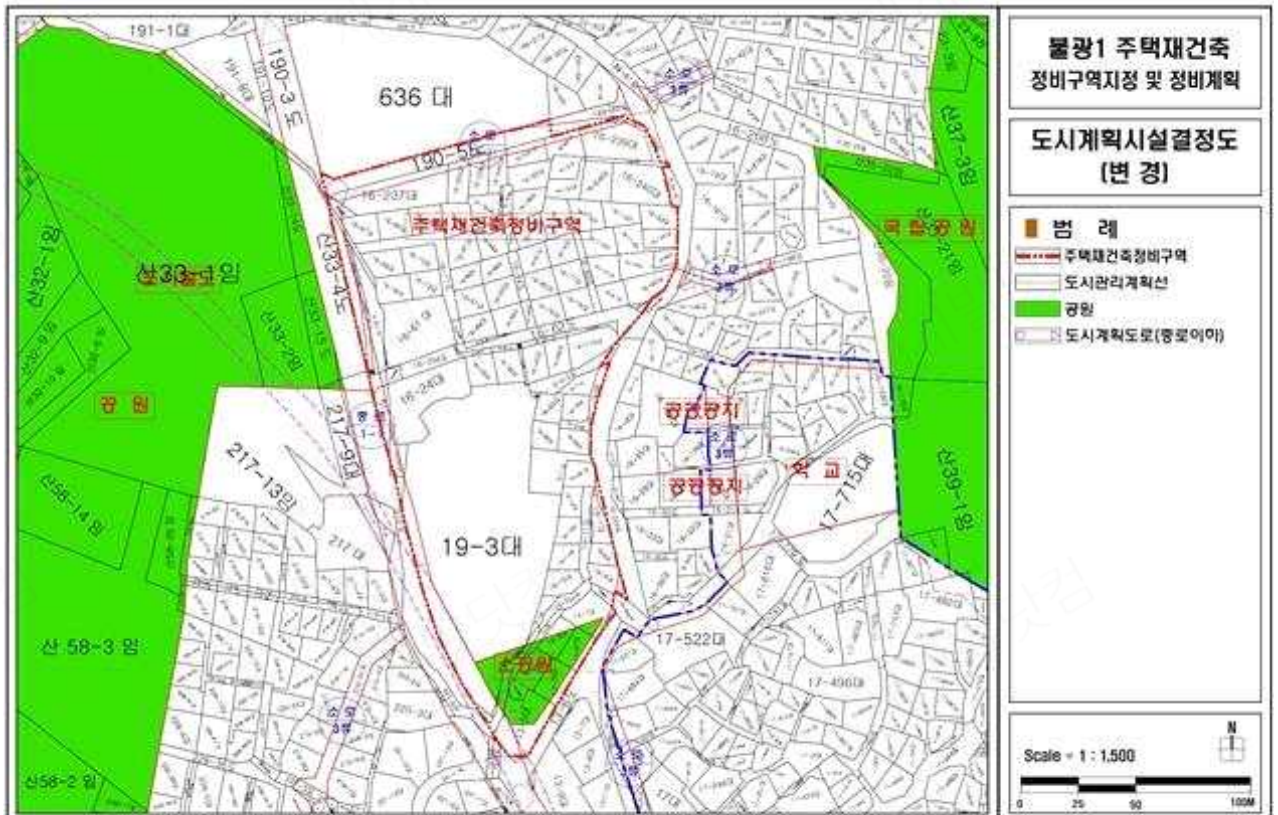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 결정도(변경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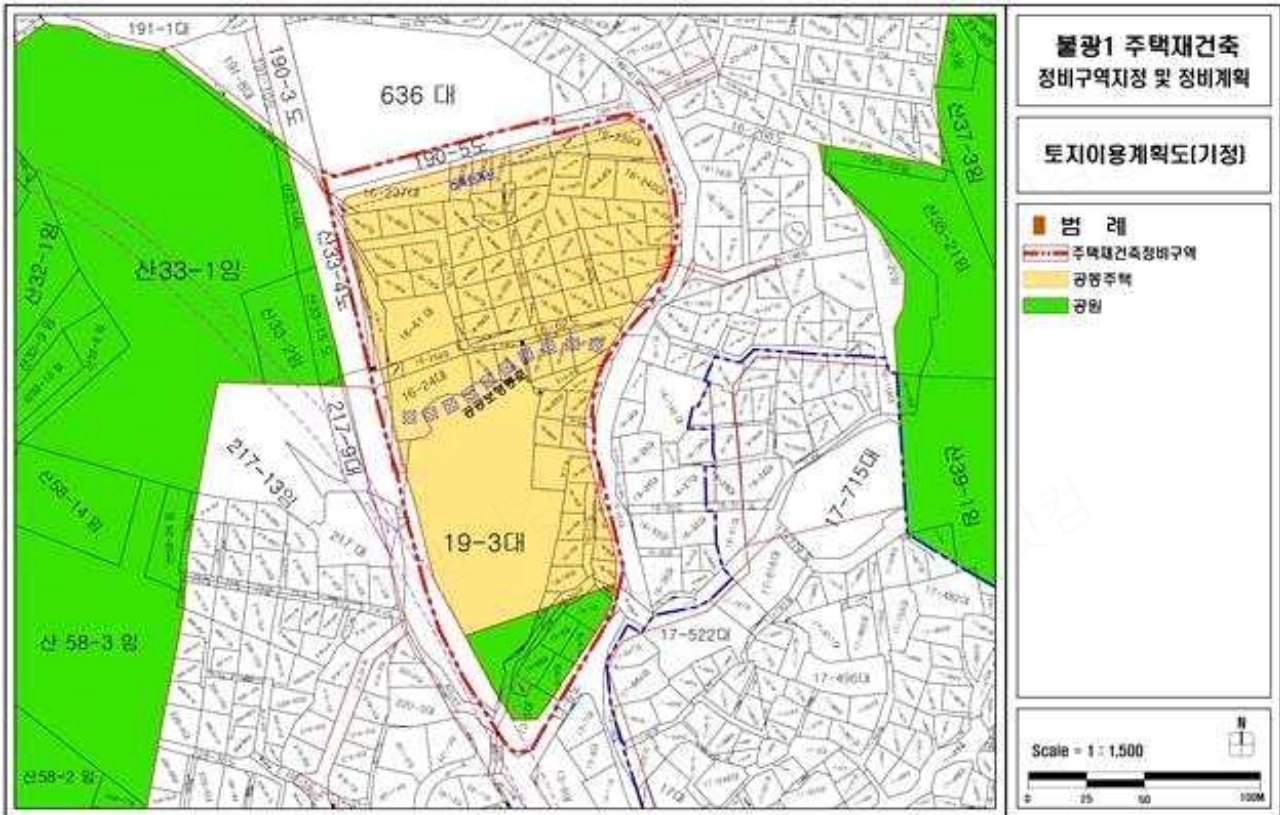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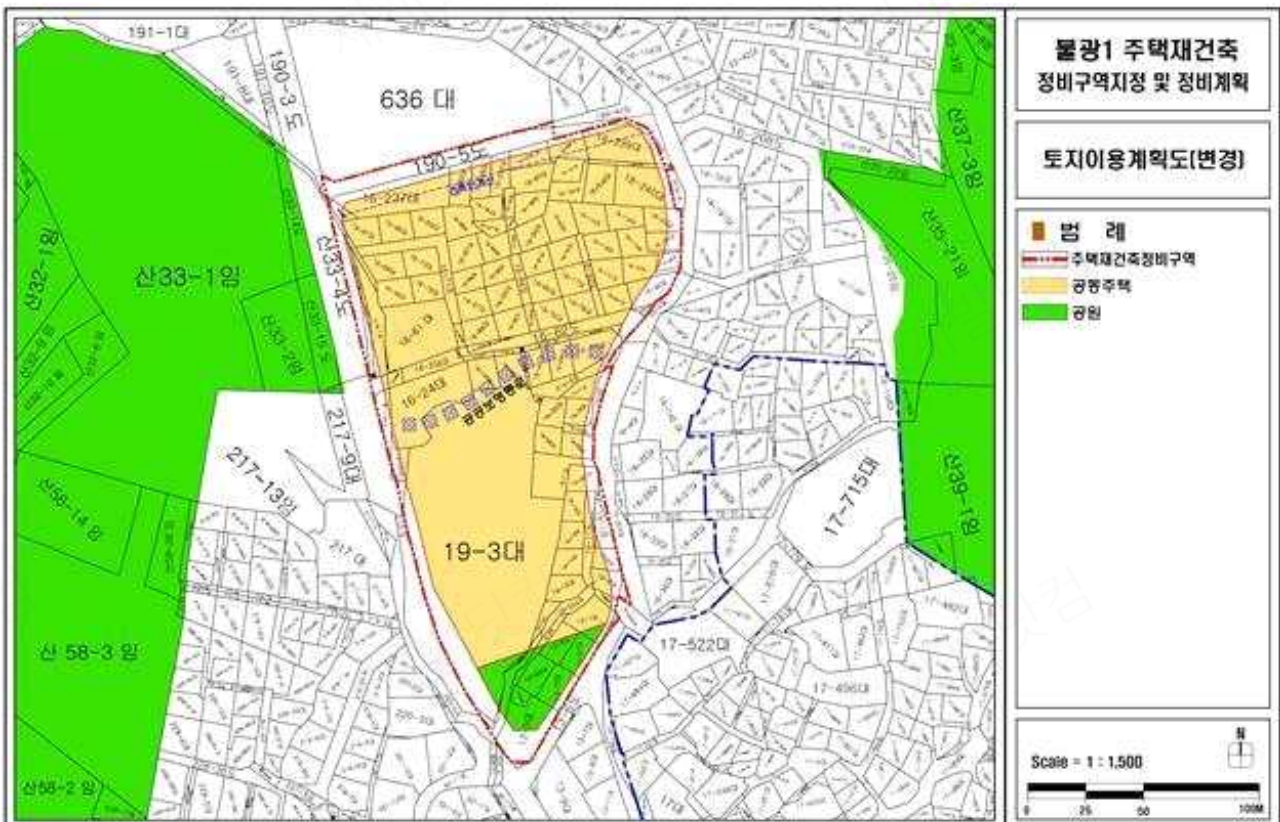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변경)



■ 토지이용계획도(기정)



■ 토지이용계획도(변경)



■ 정비계획결정도(기정)



■ 정비계획결정도(변경)



공 고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3-1304호

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7월 27일

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인

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재무관의 직무위임 범위 및 재정합의 사항을 조정하여 업무처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규칙을 정비함

2. 주요내용

가. 재무관의 직무위임 범위 조정(안 제4조)

나. 재정사항 합의 한도액 조정(안 별표2)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(참조 : 재무과, 전화 : 02-351-6622, FAX : 02-351-5641, 또는 E-mail : 0256hj@ep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이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참고사항

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.

※ 은평구 홈페이지(<http://www.ep.go.kr>) '공고·고시'에 입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규칙(안)명 :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내용	의견	비고

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

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제 출 자	2023. 7. . 재정경제국장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1. 제안이유

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 중 물품제조와 물품구매의 위임범위가 일치되도록 이 규칙을 개정하여 계약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예산집행을 이루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 중 “제조”를 “물품제조·구매 등”으로 변경함(안 제4조제1항제2호)
나. 재정사항 합의 한도액 조정(안 별표 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

제4조(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,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그 직무의 일부를 각각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직무의 위임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예산집행품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(「지방자치법」 제123조제1항에 따른 부단체장을 말한다), 실·국장, 실·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전결 기준은 따로 정한다.

1.~2. 생략

3. 시·군·구: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, 5억원 이하의 제조·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

행에 관한 사항

②~⑤ 생략

제12조(재정사항의 합의) ①~② 생략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.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- 2) 입법예고: 2023. 7. 27.(목) ~ 8. 16.(수)
- 3) 규제심사 결과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작성제외법령(가족정책과-25683호, 2023.7.13.)
- 5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이상없음(감사청렴담당관-8028호, 2023.7.13.)

작성자 : 재무과 계약팀 이희정 (전화 6622)

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제조”를 “물품제조·구매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별표 2 >

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(제6조제2항 관련)

대상 경비	합의대상 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		
	국장	과장	팀장
1. 공사 집행	3억원 이상	3억원 미만 1억원 이상	1억원 미만
2. 공사의 설계 변경	—	1억원 이상 증감	1억원 미만 증감
3. 용역, 물품제조·구매 (설계변경 포함)	1억원 이상	1억원 미만 2천만원 이상	2천만원 미만
4. 단가계약 물품 구매 (조달, 관급자재 등)	—	1억원 이상	1억원 미만
5. 기타 품의요구	—	1억원 이상	1억원 미만

※ 합의 방법

- 계약을 해야 할 것은 계약팀장의 합의를, 계약 이외의 기타 지출은 지출팀장의 합의를 받는다.
- 합의권자가 과장 및 국장인 경우에는 해당 팀장 합의를 한 다음 과장 및 국장의 합의를 받는다.
- 제1호부터 제5호(「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」 별표 1의 공통부문 중 제7호 및 제8호의 전결사항에 해당한다)외에 별도의 예산집행 전결사항이 있는 경우, 「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」 상 전결권자의 차하급자 직급을 갖는 회계담당부서 합의권자의 합의를 받는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재무관의 직무위임) ① 재 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 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4조(재무관의 직무위임) ① 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용역, <u>제조</u>	2. ----- <u>물품제조 · 구매 등</u>
3.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 <u>품구매 등</u>	<u><삭 제></u>
4. · 5. (생 략)	4. · 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